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대체 위원회 근거 마련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4442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71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49호)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66호)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72호)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28호)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9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9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대체 위원회 근거 마련 등(정부 제출)	9
2.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경고그림 등 표시(남인순의원안)	47
3.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금지·제한 등(백선희의원안)	53
4. 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근거 마련(남인순의원안)	60
5.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부터 5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김민전의원안) ..	64
6. 합성니코틴 원료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한시적 감경(서명옥의원안) ..	71
7.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강화(전진숙의원안)	79

I. 개요

1. 정부 제출안(의안번호 제2214442호)

가. 제출경위

- (1) 제 안 자 : 정 부
- (2) 제 안 일 : 2025. 11. 20.
- (3) 회 부 일 : 2025. 11.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47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1.

(3) 회 부 일 : 2025. 1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3.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64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4.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9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5.

(3) 회 부 일 : 2025. 12.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궤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5.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77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6.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82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2.
- (3) 회 부 일 : 2026. 1.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어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7. 백선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659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5.

(3) 회 부 일 : 2026.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II. 검토의견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대체 위원회 근거 마련 등(정부 제출)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지자체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의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第1章 總則</u> <u>第1條(目的)</u>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u>第2條(정의)</u>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u>제1장 총칙</u> <u>제1조(목적)</u> 이 법은 국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정의)</u> ----- --- 뜻은 -----. 1. -----이란 ----- ----- -----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 6. (생략)

第3條(責任) ① (생략)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의를 거쳐야 한다.

----- 실천 등-----

-----.

2. -----이란 -----
- 집단이 -----
----- 수행
하게 -----.

3. -----이란 -----
----- 균형 잡힌 -----
----- 개선하는 -----
-----.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른 사람-----
----- 아니 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 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
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생략)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생략)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
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
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①보
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

4의2. (현행과 같음)

5. -----
--- 관리방안

6.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관계 중앙행정
기관-----

----- 구청장을 말한다-----

----- 주요 시책-----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①---
----- 관계 중앙행정기
관-----
----- 실

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
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
회) 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
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
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
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
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
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
청하는 사항

4. 5. (생략)

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
----- 자료 -----
-----.

② 제1항-----

-----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
회) ①----- 주요
사항-----

-----.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

3. 둘 이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

4.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②----- 지명하는 사람이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민건강증진 또는 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공무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필요한 -----.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생략)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 7. (생략)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생략)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생략)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평가 -----

②-----
-----.

1. ----- 정책 수립-----

2. (현행과 같음)

3. ----- 운영 지원

4. ~ 7. (현행과 같음)

8. -----
- 지역보건의료기관-----

9. (현행과 같음)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 ⑥ (생략)

第2章 國民健康의 관리

第6條(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생략)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_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생략)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6조의4(인증의 취소) ①·②

12. -----

----- 인정하는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혼인 전 -----

-----.

③제2항에 따른 건강 확인-----

-----.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으려는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인증의 취소) ①·② (현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 ③ (생략)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행과 같음)

③ -----
----- 취소하려는 -----

-.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
----- 필요한 -----

-.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2.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
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第8條(禁煙 및 節酒運動等)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
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
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
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기
준, 변경 또는 금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①--

지나친 -----

-.

②-----

-- 절주(節酒)-----

---.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 대통령령으로

지나친 -----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
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
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
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
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
하여야 한다.

5. · 6. (생 략)

③ (생 략)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
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
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

⑥----- 표
시 내용-----

--.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하려는
경우에는 -----
-- 용기 하단-----
-----.

5.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

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 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여러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금주구역에
이를 -----
--. -----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 -----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

-- 보건복지부령으로 -----

-----.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26. (생략)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④ -----

----- 금연구역
임을 -----
하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금연구역
임-----

-----.

1. ~ 2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
-----.

1. ~ 3. (현행과 같음)

⑦ -----

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
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⑧ (생 략)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
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
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
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
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
반한 경우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
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 여러 사람-----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
----- 금연구역임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 담배의 제조업자 -----

----- 담배갑 포장지 -----

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

-----.
----- 담배갑 포
장지-----
-----.

1. 2. (현행과 같음)

3. ----- 흡연
습관-----

4. 5. (현행과 같음)

② -----
----- 담배갑 포장지-----

-. ----- 담배갑
포장지 -----

-----.

③ ----- 규정한
사항 외에 -----

-----.

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
----- 방법으로만
-----.

1. ----- 내부에

----- 전시하거나 -----
----- . ----- 외부
에서 -----
전시하거나 부착하여서는 아
니 된다.

2. -----

----- 책자 형태의
정기간행물, -----

----- 신문 및 -----

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4. (생략)

② ~ ⑤ (생략)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생략)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
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생략)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쓰여

3.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자에 대하여 ----- 신고 또
는 -----

4. (현행과 같음)

③ _____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
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條(健康生活實踐協議會) ①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
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
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발급-----.

④ -----
----- 수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서와 그 ----
--- 지니고 -----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직무 범위 ----

-----.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 다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건강생
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第11條(保健敎育의 管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第12條(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②제1항에 따른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보건교육을 --.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 보건의료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

-- 수준 등-----.

②-----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

③----- 제2항에 따라 -----
----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건교육-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삭제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

④제1항에 따른 -----

-.

제12조의2(보건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사람에게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1. (현행과 같음)

3. ----- 실형을 선고받고
----- 끝나지 -----

----- 아니한 사람

4. -----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제1항에 따른 -----
----- 1급부터 3급까지
로 ----- 자격증 발급절차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생략)

제12조의3(국가시험) ①제1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

--.

④-----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
-----.

⑤----- 제1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⑥ ----- 발급 받은 -----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국가시험) ①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②----- 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
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
서 보조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
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
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第13條(保健教育의 評價) ①보건
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
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

서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드는 -----
----- 범위-----
-----.

③-----제1항 단서
에 따라 -----

---- 보건복지부령으로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시험과목·응시
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
-----.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
----- 국민을
대상으로 한 -----
-----.

②제1항에 따른 -----

로 정한다.

第14條(保健敎育의 開發等) 보건

복지부장관은 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 관한 法律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敎育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敎育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營養改善) ①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의 營養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營養개선방안을 강구하고 營養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營養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2. (생 략)
3. 기타 營養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營養에 관한 조사

-----.

제14조(보건敎育의 개발 등) 보건

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보건敎育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보건敎育에 대한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영양개선) ①-----

----- 영양개선 방안을 마련-----
-----.

②-----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 ----

(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第17條(口腔健康事業의 計劃樹立·施行) (생략)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

-----.

②-----

----- 담당하는 -----
-----.

③----- 하는 -----

--- 지니고 이를 관계인-----
-.

④-----

----- 필요한 -----

-.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장려하기 위한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현행과 같음)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 구강질

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략)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4. (생략)

5.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19條(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환 예방과 구강건강 -----
-----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구강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대통령령으로 -----
②---- 각 호-----

---.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 인력 -----

----- 마련-----.

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1. ~ 4. (현행과 같음)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생략)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20條(檢診)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5. ---- 조기 발견-----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그 운영-----
-----.

제19조의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필요한 -----
-----.

제20조(검진) -----
-----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수 있다.

第21條(檢診結果의 公開禁止)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章 國民健康增進基金

第22條(基金의 설치 등) ① (생략)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생략)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

-----.

제21조(검진 결과의 공개금지) 제 20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 -----
--- 사람은 -----
----- 사유 없
이 검진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 (현행과 같음)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 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생 략)

2. 전자담배

가. (생 략)

나. 연초 및 연초 고품질을 사용하는 경우:

1) (생 략)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 9.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

공제되거나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3. ~ 9. (현행과 같음)

②-----

--- 명세-----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생략)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 부담금을 내야
-----.

⑤-----
내야 할 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
----- 경우에는 -----

-----.

⑥----- 제5항에 따라 -----
-----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
----- 대통령령으로 -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ㄱ.

②-----

----- 경우에는 -----

-----.

③-----

----- 그 요구에 따라야 -----.

제23조의3(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
----- 없으면 -----
----- 그 요청에 따라야 -----.

③----- 제2항-----

----- 대해서는 -----
-----.

第24條(基金의 관리·運用) ①

(생략)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생략)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 8. (생략)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 11. (생략)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

행과 같음)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
--.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 각 호-----.

1. ----- 금연광고-----

2. 건강생활 -----

3. (현행과 같음)

4. ----- 보건의료 관련 -----

5. ~ 8. (현행과 같음)

9. -----
----- 하는 -----

10. · 11. (현행과 같음)

12. -----

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 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 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第4章 補則

第26條(費用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

-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

②----- 제 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때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을 -----.

③----- 제 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때 -----.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사업을 ----- 비용을 보조-----.

제27조(지도·훈련) ①-----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第28條(보고·檢査) ①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
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
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
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
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 자질 향상-----

-----.

②----- 필요한

-----.

제28조(보고·검사) ①-----

----- 인정하
는 경우에는 -----

-----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업무-----
----- 관계 공무
원-----
-----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
-----.

②제1항에 따라 -----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
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30條(手數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生活保護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第5章 罰則

第31條의2(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②-----

하는 -----
-----.

③ -----

----- 소속 기관 -----
-----.

제30조(수수료) ①-----
----- 드는 경비
중 -----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

제5장 벌칙

제31조의2(벌칙)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6. (생략)

第32條(罰則)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 광고내용 변경 등 의 -----

2. ~ 6.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을 -----
----- 사유 없이 광고내용 변경 또는 광고 -----

-----.

제33조(양벌규정) -----
----- 사용인, 그 밖의 -----

-----.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제9조제2항의</u>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의3. <u>제9조제2항을</u>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u>제23조제2항의</u>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u>허위의</u> 자료를 제출한 자	4. <u>제23조제2항을</u> ----- ----- - <u>거짓</u>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과태료를 부</u> <u>과한다.</u>
1. <u>제9조제3항의</u>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 <u>제9조제3항을</u> ----- ----- -----
2. 삭제	
3. <u>제28조의</u>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u>허위로</u> 보고한 자와 <u>관계공무원의</u>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u>제28조에</u> 따른 ----- ----- <u>거짓으로</u> ----- <u>관계 공무원</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지자체 내에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법(제10조)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요 >

- (법적 개념) 건강생활 실천 운동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하는 **지자체 협의체**(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입법 취지) 지자체가 지역사회(주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수요 기반의 건강정책·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한 장치
- (운영)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 * 통상 부단체장을 회장으로 한 자문기구이며, 주민 건강증진 계획 수립·시행, 주민 건강생활실천 지원, 건강도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자료: 보건복지부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건강생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경남 거창군 등)로 병합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지역보건법」 상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¹⁾로 하여금 수행(전남

1)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 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

고흥군)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 지자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유형별 운영 현황 >

구분	지자체수	사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14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34	거창군, 구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흡수)	10	가평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흡수)	29	보령시, 공주시

자료: 보건복지부(법제처 법령정보에 등록된 조례 기준)

- 이러한 사례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내 위원회 간 통합 운영 근거의 마련을 요청(2022. 8. 22.)함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임.
- 관련 입법례를 살펴 보면, 「지역보건법」과 「건축기본법」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또는 지역건축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한편, 현행법에는 ‘第1條(目的)’과 같은 한자 표기,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제9조의4제1항제2호)과 같은 어려운 표현, ‘「生活保護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제30조제2항) 등과 같이 개정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정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관계 공무원’은 그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다른 입법례²⁾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⑤ (생략)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경고그림 등 표시(남인순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전자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략)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전자담배</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④ ----- ----- <u>전자담배(흡연을 위한 보조기구를 포함한다)</u> ----- -----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적용하고 있음.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 한편, 2025. 12. 23. 개정 「담배사업법」(2026. 4. 24. 시행)에 따른 정의를 보면,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고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초의 잎’을 이용한 껴련·액상형태 등의 담배 외에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도 담배에 포함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현재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2026년 4월 24일부터 경고그림·문구 표기나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 담배에 관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임.

□ 참고로, 담배 판매 동향을 보면 전체 담배 판매량은 2017년 35.2억 갑에서 2024년 35.3억갑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0.8억갑에서 6.6억갑으로 급증하여 판매 비중이 2017년 2.3%에서 2024년 18.7%로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담배 판매량 및 제품별 판매 비중>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판매량(억 갑)	35.2	34.7	34.5	35.9	35.9	36.3	36.1	35.3
궐련담배	34.4	31.4	30.6	32.1	31.5	30.9	30.0	28.7
궐련형 전자담배 등 ³⁾	0.8	3.3	3.8	3.8	4.4	5.4	6.1	6.6
궐련형 전자담배 등 판매비중(%)	2.3	9.5	11.0	10.6	12.3	14.9	16.9	18.7

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담배시장 동향보고

□ 한편, 2024. 10. 11.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672호)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하는 데에 이용되는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를 “흡연전용기구”라 하여 경고그림 및 경구문구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표현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경고그림·문구 등 표기를 의무화하는 대상은 ‘전자담배 사용에 필요한 기기·장치’로 유사한 것으로 보임.

3) (궐련형 전자담배) 히츠[PM], 네오스틱[BAT코리아], 핏·믹스[KT&G]/(CSV 전자담배) 줄[줄랩스코리아], 시드[KT&G], 1pod = 1갑으로 산정 / (연초고형물 전자담배) 네오[BAT코리아] 3pod = 1갑, 메비우스 포 플롭테크[JTI코리아] 5캡슐 = 1갑으로 산정/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800[BAT코리아] 0.25개 = 1갑으로 산정

< 현행 및 각 개정안 비교 >

현행	남인순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략)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담배등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④ -----전자담배(흡연을 위한 보조기구를 포함한다)-----.	④ -----담배 및 흡연전용기구(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하는 데에 이용되는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개정안은 전자담배의 흡연보조기구에 대해서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 고시」에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무화기·카트리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포장지 등이 아닌 흡연보조기구는 재질 및 형태가 다양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인쇄 등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해외의 경우에 전자담배 흡연보조기구의 포장지 또는 케이스에 경고그림·문구를 인쇄하는 경우가 있으나, 흡연보조기구 자체에 경고그림 문구를 인쇄·각인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전자담배 흡연보조기구 경고그림·문구 부착 사례 (포장지·케이스 등) >



* 출처 : 각 제품 판매 페이지(vape uae, 아마존)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문구의 표기 대상을 기존 ‘담배의 담뱃값 포장지’에서 ‘흡연보조기구’까지 확대하는 것은 흡연자의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는 등 국민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이나, 흡연보조기구 기기의 재질 및 형태가 다양하여 인쇄 또는 각인의 방식과 규격을 정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① ‘흡연보조기구’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② 본질적으로 흡연보조기구가 ‘담배’와 같이 그 자체가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

거나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흡연보조기구에 경고그림 등을 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쉘런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부착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3.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금지·제한 등(백선희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와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받는 담배에 전자담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포함하고(안 제9조의2제4항, 안 제9조의4제1항 본문 및 제3항·제4항), 광고의 금지·제한을 적용받는 광고 주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전자담배</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연초 니코틴 용액인 액체 형태의 담배(이하 “전자담배”라 한다)</u> -----.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u>담배</u> 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u>전자담배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하 이 조에서 “담배등”이라 한다)</u> -----.
1. <u>지정소매인</u> 의 영업소 내부에	1. <u>지정소매인 또는 전자담배를</u>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 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 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u> ----- -----. ----- ----- -----.
2. ~ 4. (생략)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u>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u>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u>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u> 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 -----<u>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u> <u>에게 판매하는 자</u>, 「담배사업 법」에 따른 <u>도매업자 또는 지</u> <u>정소매인</u>-----. -----<u>전자담배</u> <u>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u> <u>자</u>, 「담배사업법」에 따른 <u>도매</u> <u>업자 또는 지정소매인</u>-----.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 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u>담배</u>의 품명·종 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③ ----- ----- -----. 1. -----<u>담배등</u>----- ----- -----
2. ~ 4. (생략) ④ 제조자등은 <u>담배</u>에 관한 광 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 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 제하여야 한다. ⑤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u>담배등</u>----- ----- ----- -----. ⑤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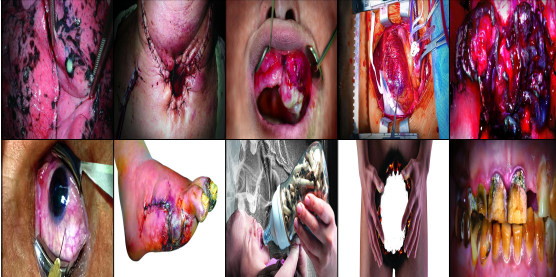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등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경고그림의 표기 방법 등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 5. (생략)
- ② ~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담배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 예시 >

	궐련형 담뱃갑	전자담배 담뱃갑
경고 그림	총 10종(예: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궐련형, 니코틴 포함 액상형 각 2종
경고 문구	“(암명)으로 가는 길” (예: 폐암으로 가는 길)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경고 그림 이미지		

자료 :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재 다양한 종류의 신종 전자담배가 등장함에 따라 전자담배를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연초 니코틴 용액인 액체 형태의 담배”로 정의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는 전자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러한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등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적용하고 있음.
- 2025. 12. 23. 개정 「담배사업법」(2026. 4. 24. 시행)에 따른 정의를 보면,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고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초의 잎’을 이용한 쥬련·액상형태 등의 담배 외에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도 담배에 포함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2026년 4월 24일부터 경고문구 등 표시나 광고 금지·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 담배에 관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인바,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담배(연초 니코틴 용액인 액체 형태인 담배)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및 「개별소비세법」 별표에서는 각각 전자담배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전자담배 정의 규정 비교 >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별표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 함으로써 흡연과 같 은 효과를 낼 수 있 도록 만든 연초 니코 틴 용액인 액체 형태 의 담배(이하 “전자담 배”라 한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담 배에 제조자등이 표 기하여야 할 경고그 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 ·형태 등은 대통령 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 른 담배의 구분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2 전자담배: <u>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 초 고형물을 전자장 치를 사용해 호흡기 를 통해 체내에 흡입 함으로써 흡연과 같 은 효과를 낼 수 있 도록 만든 담배와 이 와 유사한 형태의 담 배로서 그 구분은 다 음 각 목에 따른다.</u>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 배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 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기타 유형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 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자담배: <u>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 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u>	5. 전자담배: <u>니코틴이 포 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호흡 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 입함으로써 흡연과 같 은 효과를 낼 수 있도 록 만든 담배</u>

- 위의 규정들을 비교해 보면,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은 흡연보조기구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으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니코틴 종류의 경우 개정안은 “연초 니코틴 용액인 액체”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

행령」 등은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에 차이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연초 니코틴 용액’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 용액’으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정의보다 축소되어 궐련형 전자담배나 합성 및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경고문구 등 표시와 광고 금지·제한의 적용 등을 받는 담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지정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외부에서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등만을 할 수 있고, 제조자들은 이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음.
- 개정안은 전자담배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이를 광고의 금지·제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도 지정소매인과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재 담배 광고 행위의 금지·제한을 받는 지정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6조⁴⁾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임.

4)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 2025. 12. 23. 개정 「담배사업법」(2026. 4. 24. 시행)에 따른 담배의 범위에는 개정안이 정의하고 있는 전자담배도 포함되므로, 2026년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개정안의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포함되었는 바,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니코틴 원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 등 표시 및 광고금지 등 규제 적용이 가능하고, 전자담배 판매자 또는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한국담배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의하는 전자담배와 개정안에 따른 전자담배의 범위가 서로 불일치하게 되어 법체계의 정합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임.

4. 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근거 마련(남인순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국가시험)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2조의3(국가시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u>
<u><신 설></u>	<u>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u>
<u>④</u> (생 략)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의3(국가시험) ①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 운영본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역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험 정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보건의료 직역별 응시제한 근거법률 현황 >

직종	응시제한 근거 법령	제한내용	위임
의사	의료법 제10조 (응시 자격 제한 등)	①결격사유자 응시 불가 ②부정행위자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③부정행위자 응시 기회 최대 3회 제한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시험 등 응시 제한) 위반 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약사법 제9조 (응시 자격의	(9조) 결격사유자 응시 불가 (10조) ①부정행위자 시험	위임규정 없음

한약사	제한) 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②부정행위자 <u>2년간 응시 제한</u>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응시 자격의 제한 등)	①결격사유자 응시 불가 ②부정행위자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③부정행위자 응시 기회 최대 <u>3회 제한</u>	<u>시행규칙</u> 제10조 (부정 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 위반 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2 (응시 자격 제한 등)	①부정행위자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②부정행위자 응시 기회 <u>최대 3회 제한</u>	<u>시행규칙</u> 제10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위반 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부정행위자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②부정행위자 응시 기회 <u>최대 3회 제한</u>	<u>시행령</u> 제26조의4 (응급구조사 시험의 응시 제한 기준) 위반 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④부정행위자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⑤부정행위자 2회 <u>응시 불가</u>	<u>시행령</u> 제6조의2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부정행위 정의
보건교육사	-	-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교육사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17명이 응시하였고 그 기간 동안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 무효 또는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제한하고 있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은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으나, 응시제한 세부 기준 마련 및 국가시험 위탁 기관의 시험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2021~2025년 보건교육사 응시 현황 >

연도 및 급수	횟수	시험시행일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부정행위자 적발
2021년 도 1급	제 12회	2021.1.30	16	5	31.3	-
2021년 도 2급			82	44	53.7	
2021년 도 3급			1,405	947	67.4	
2022년 도 1급	제 13회	2022.2.12.	11	3	27.3	
2022년 도 2급			111	69	62.2	
2022년 도 3급			1,105	642	58.1	
2023년 도 1급	제 14회	2023.2.4.	6	4	66.7	
2023년 도 2급			131	78	59.5	
2023년 도 3급			1,009	716	71.0	
2024년 도 1급	제 15회	2024.2.3.	12	3	25.0	
2024년 도 2급			135	77	57.0	
2024년 도 3급			884	638	72.2	
2025년 도 1급	제 16회	2025.2.8.	12	9	75.0	
2025년 도 2급			166	118	71.1	
2025년 도 3급			932	724	77.7	
계			6,017	4,077	67.8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보건교육사에 대하여 법령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타 직역과의 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개정안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u>3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 ----- ----- <u>50</u> <u>미터</u> ----- -----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u>3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u>3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생략)	2. ----- ----- ---<u>50미터</u>----- ----- ----- 3. ----- -----<u>50</u> <u>미터</u>----- ----- ----- ⑦ ~ ⑨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금연구역의 지정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법 제정 당시에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나⁵⁾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회·정부 등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대형건물 등 26종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2017년 12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제9조제6항), 다시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 8. 16. 개정, 2024. 8. 17. 시행)되었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⁶⁾됨.

5)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8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6)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금연구역 지정제도 연혁 >

연 도	내 용
1995년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대상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의료기관,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등 10종의 공중이용시설
1999년	-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변경·확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등 추가
2002년	- 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구분 ·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등
2003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확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2011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2017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2023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장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포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련 규정 >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2017. 12. 3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2023. 8. 16.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2024. 8. 17. 시행)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금연구역은 전국적으로 4만 8천여 개 지역이고, 금연지도·단속원은 2025년 2월 기준 총 1,819명, 보건소당 평균 6.9명이 배치됨.
- 2024년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가 1,154건임(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던 시기 180건, 2024년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로부터 3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던 시기 974건)
- 2022년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 연구」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궤련이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에 영향을 미쳐 초미세먼지로 유지되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연기가 100미터 이상, 궤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미터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연구역을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에서 ‘50미터’까지 확대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개정법이 시행(2024. 8. 17.)된 지 1년 5개월여에 불과하여 현장 정착과 효과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금연지도·단속 등 지자체의 관리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위 질병관리청의 용역과제에서도 간접흡연 노출 예방 안전거리는 만 6세~10세 어린이의 경우 실외 공간에서 30m 이상, 시설 출입구로부터 20m 이상으로 제안하고 있는바, 영유아 및 학생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실증적 자료의 축적도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및 지자체의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지자체(강원 원주시, 인천 부평구 및 계양구, 충북 청주시)의 경우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단속인력 부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 외, 한국담배협회는 과도한 금연구역 확대는 주민의 사적 영역 침해 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실외 금연구역의 지정은 실효성 및 관리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⁷⁾.

7) 이외,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여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법을 개정할 경우 제도적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고, 금연구역 확대가 오히려 음성적 흡연 증가 및 간접흡연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6. 합성니코틴 원료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한시적 감경(서명옥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50%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 ----- ----- ----- ----- ----- ----- ----- ----- ----- ----- ----- ----- .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담배’⁸⁾ 관련 규정을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전제로 한 규정(「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율)과 ②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를 전제로 한 규정(국민건강증진금 부담주체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에 대한 규제
로, 규제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담배사업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반면, 제23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 내에서 지방세
등과 함께 부과·징수되는 것이어서 규율대상을 「지방세법」에 따
른 담배로 규정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 각 조항의 규제대상이나 규
제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종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
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되었던바,
2025. 12. 23. 개정(2026. 4. 24. 시행)을 통하여 그 정의에 ‘연초’
및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이
포함되었음.

8) 「국민건강증진법」은 가장 먼저 제8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담배’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인지, 「지방세법」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음.

< ‘담배’의 정의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2025. 12. 23. 개정, 2026. 4. 24. 시행).(종전: 연초(煙草)의 잎)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 삭 제 > (2025. 12. 23.) (종전: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제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략)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후단 생략)

③ (생략)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은 담배: 1그램당 534.5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기타 유형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각련(刻煙):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9. 머금은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 담배9) 관련 제세부담금 >

담배종류		부과 기준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개 별 소비세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엽연초 부담금	합 계
궐련		20개비	1,007	443	594	841	24.4	5	2,914.4
파이프담배		1그램	36	16	21	30.2	-	-	103.2
엽궐련		1그램	103	45	61	85.8	-	-	294.8
각련		1그램	36	16	21	30.2	-	-	103.2
전자담배	액상형	1밀리리터	628	276	370	525	1.2*	-	1,800.2
	궐련형	20개비	897	395	529	750	24.4	-	2,595.4
	고형물	1그램	88	39	51	73	24.4	-	275.4
물담배		1그램	715	315	422	1,050.1	-	-	2,502.1
씹는 담배		1그램	364	160	215	34.4	-	-	773.4
머금은 담배		1그램	364	160	215	534.5	-	-	1,273.5
냄새맡는 담배		1그램	26	11	15	21.4	-	-	73.4

주: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기물 부담금은 카트리지 당 24.4원 부과(1개당 1.22원)

자료: 재정경제부

□ 종전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경우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었고,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2021년부터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음¹⁰⁾.

□ 한편, 2025. 12. 23. 「담배사업법」 개정 시 “정부는 담배 정의 확대에 관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¹¹⁾들의 초기 부

9) 참고로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외에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와 폐기물부담금 및 엽연초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10) 오승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11) 종전 「담배사업법」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을 ‘담배’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합성니코틴 제품

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 효과 및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및 부담금 부담체계 마련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2년간 50%로 감경하기로 한 「개별소비세법」이 2025. 12. 23. 공포(법률 제21206호, 2026. 4. 1. 시행)되었고, ‘담배소비세’의 세율 또한 2년간 50%로 감경하기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 12. 31. 공포(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되었음.

- 개정안은 위와 같은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또한 2년간 50%로 경감하려는 것인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에 대하여 제세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 증가액은 2026년부터 5년간 2조 2,2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할 경우에는 1조 8,296억원으로, 총 3,919억원의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도 요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제조 및 유통 관련 사업자 분포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대형 담배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하여 판매 중이었고, 저가 일회용 제품들이 다수였다는 기사(이투데이, 2025. 12. 15.) 등을 통하여 영세 사업자가 많았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합성 니코틴 원료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추계 >

(단위: 억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개별소비세 (2년 간 감경) (A)	920	1,840	2,761	3,682	3,682	12,88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년 간 감경) (B) * B = A × 1.42 (2026~2030)	<u>1,306</u>	<u>2,613</u>	3,921	5,228	5,228	18,29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년 간 감경 미적용) (C) * C = B × 2 (2026~2027) * C = B (2028~2030)	<u>2,612</u>	<u>5,226</u>	3,921	5,228	5,228	22,215
감경 금액 차이 (C-B)	<u>1,306</u>	<u>2,613</u>	0	0	0	<u>3,919</u>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내용” p.40. 재가공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추계액 산출방법 : 액상형 전자담배 1ml 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525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개별소비세 × 1.42”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 합성니코틴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한 취지에 비추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7.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강화(전진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시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기금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	<u>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의2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u>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 지원 연혁을 살펴 보면, 2000년 통합 국민건강보험¹²⁾ 출범 당시 일반회계에서 처음 지원하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통한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2007년부터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재원으로 하여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었음. 부칙 개정을 통해 2~5년 단위로 재정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현재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¹³⁾.

<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 연혁 >

구분	2000~2001	⇒ 2002~2006	⇒ 2007~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지원기준 및 규모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재량규정)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 일반회계 35% 증진기금 15%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상당액 일반회계 14% 증진기금 6% (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이내)
사용 용도	일반회계 -지역보험급여비 -지역가입자 관리운영비	일반회계 증진기금 -지역보험급여비 -지역가입자 관리운영비 -65세이상 노인급여비	일반회계 증진기금 -가입자파양자-건강검진 등 보험급여비 건강증진사업 -건강보험사업-흡연 질병 운영비 급여비 -보험료 경감-65세이상 지원 노인급여비
지원 기한			2027년 12월 31일

* 자료: 보건복지부

12)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 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을 통합함.

13) 부칙 개정을 통하여 2~5년 단위로 재정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음('11.12.31.개정(2016년 12월 31일까지), '16.3.22. 개정(2017년 12월 31일까지), '17.4.18. 개정(2022년 12월 31일까지), '23.6.13. 개정(2027년 12월 31일까지)).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및 2020년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당기수지 적자를 제외하면 매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였고, 2024년 기준 누적수지 규모는 29조 7,221억원임.

< 건강보험 재정 현황(2014~2024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 입	485,024	524,009	557,195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87,773	949,113	990,870
(증가율)	(7.4%)	(8.0%)	(6.3%)	(4.1%)	(7.1%)	(9.6%)	(7.9%)	(9.6%)	(10.3%)	(6.9%)	(4.4%)
· 보험료수입	412,404	440,476	473,065	500,099	536,415	587,428	624,849	692,270	765,538	815,180	839,520
· 국가 지원금 ^{주1}	63,221	70,974	70,974	67,839	70,802	77,803	92,283	95,720	104,992	109,702	121,658
· 기타수입	9,399	12,559	13,156	12,052	13,942	15,412	17,053	16,931	17,243	24,231	29,692
지 출	439,155	482,281	526,339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851,482	907,837	973,626
(증가율)	(5.7%)	(9.8%)	(9.1%)	(8.8%)	(8.7%)	(13.8%)	(4.1%)	(5.3%)	(9.6%)	(6.6%)	(7.2%)
· 보험급여비	424,939	465,009	510,541	555,374	605,896	690,429	718,291	757,265	831,660	887,961	952,530
· 관리운영비	13,753	16,773	15,280	16,835	16,486	17,894	18,851	18,980	19,179	19,337	21,505
· 기타지출	463	499	518	704	555	563	574	447	643	539	14436
당기수지	45,869	41,728	30,856	7,077	△1,778	△28,243	△3,531	28,229	36,291	41,276	17,244
누적수지	128,072	169,800	200,656	207,733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79,977	297,221

보험료율 (인상율)	5.99% (1.7%)	6.07% (1.35%)	6.12% (0.9%)	6.12% (-)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7.09% (-)
수가인상율 (환산지수)	2.36%	2.20%	1.99%	2.37%	2.28%	2.37%	2.29%	1.99%	2.09%	1.98%	1.98%

* 주1: 국가 지원금=일반회계 14%(일반회계 과징금 50%) + 국민건강증진기금 6%(담배 부담금 수입의 65% 상한)

*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3.11월)으로 '24년부터 과징금 지원액 미포함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리 사회는 2024년 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준비금 전망: 2023~2032년]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평균 증가율
수입	93.3	98.8	106.5	114.9	123.9	133.7	144.3	155.6	165.0	175.2	7.2
지출	92.0	100.2	109.7	121.6	132.7	144.4	154.8	166.1	180.1	195.1	8.7
재정수지	1.3	-1.4	-3.2	-6.7	-8.8	-10.7	-10.5	-10.5	-15.2	-20.0	
누적 준비금	25.2	23.8	20.6	13.9	5.2	-5.5	-16.0	-26.5	-41.6	-61.6	

주: 1. 누적 준비금은 결산상 잉여금을 뜻하며, 음수로 표기된 준비금은 준비금 소진 후 발생한 누적 적자액을 뜻함

2. 2023,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기결정된 7.09%, 2025~2032년은 매년 2.06%(최근 3년 평균)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030년부터 8% 상한 유지를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 지원금(일반회계 14%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6%) 규모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과 연동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가입자의 보수월액 증가와 함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현황(2014~2025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가 지원금 계(A+B)	63,149	70,902	70,917	67,747	70,711	77,671	92,152	95,589	104,862	109,571	121,658	126,093
일반회계(A)	52,958	55,717	52,003	48,736	51,910	59,589	73,351	76,423	86,712	91,363	102,636	106,211
증진기금(B)	10,191	15,185	18,914	19,011	18,801	18,082	18,801	19,167	18,149	18,208	19,022	19,882

* 주: 위 표의 “일반회계” 지원금에서 과징금 수입을 통한 지원금은 제외되어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일반회계와 기금 모두 매년 법정지원율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과소 지원되고 있는바, 2025년도의 경우 예상수입액 대비 정부지원율은 일반회계 12.1%,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3%로 나타나고 있음.

< 2024 ~ 2025년 건강보험 정부지원 >

(단위: 억원)

구분	보험료 예상수입	예산액			보험료 수입 대비 비율		
		소계	일반	기금	소계	일반	기금
'24년 예산	846,022	121,658	102,636	19,022	14.4%	12.1%	2.3%
'25년 예산	875,646	126,093	106,211	19,882	14.4%	12.1%	2.3%
('24년 대비)	(+29,624)	(+4,435)	(+3,575)	(+890)	(-)	(-)	(-)

□ 이에 더하여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보험료 수입을 보면 2020년, 2024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금액보다 보험료 실제 수입금액이 더 많은 추세였음에도, 건강보험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욱 과소 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의 과소계상 문제가 지적되어 정부지원 관련 법정비율을 준수하라는 ‘주의’ 시정요구가 채택되었음.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현황(일반회계, 2014~2024)>

(단위: 억원, %)

연도	보험료수입*			예산수입액의 14% (D=A*14%)	조정계수 (E)	실제 지원액 (F=D+E)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금 (G=F/B)	법정지원율(14%) 대비 미달 비율 (H=14%-G)
	예산 (A)	실적 (B)	과소추계 규모 (C=B-A)					
2014	370,464	412,404	41,940	51,865	1,093	52,958	12.8%	1.2%p
2015	397,975	440,476	42,501	55,717	-	55,717	12.6%	1.4%p
2016	421,733	473,065	51,332	59,043	△7,040	52,003	11.0%	3.0%p
2017	444,440	500,099	55,659	62,222	△13,486	48,736	9.7%	4.3%p
2018	533,209	536,415	3,206	74,649	△22,739	51,910	9.7%	4.3%p
2019	578,154	587,428	9,274	80,942	△21,353	59,589	10.1%	3.9%p
2020	639,260	624,849	-14,411	89,496	△16,145	73,351	11.7%	2.3%p
2021	664,901	692,270	27,369	93,086	△16,663	76,423	11.0%	3.0%p
2022	727,540	765,538	37,998	101,856	△15,144	86,712	11.3%	2.7%p
2023	761,822	815,180	53,358	106,655	△15,292	91,363	11.2%	2.8%p
2024	846,022	839,520	-6,502	118,443	△15,807	102,636	12.2%	1.8%p

* 주: 위 표의 “실제 지원액”에서 과징금 수입을 통한 지원금은 제외되어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 기금 지원금의 경우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기준으로 하면서, 지원 상한인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6%보다 더 낮게 나타나 지원액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있었음.

<담배부담금 예상수입(65%)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6%) 비교(2014~2025년)>

연도	지원상한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
2014	10,191	<	22,228
2015	15,185	<	23,879
2016	18,914	<	25,304
2017	19,936	<	26,666
2018	19,731	<	31,993
2019	19,011	<	34,689
2020	18,801	<	38,356
2021	19,167	<	39,894
2022	18,149	<	43,652
2023	18,208	<	45,709
2024	19,022	<	50,761
2025	19,882	<	52,539

<건강보험 국가지원금 현황(국민건강증진기금, 2014~2025년)>

(단위: 억원)

연도	예상 보험료수입(A)	지원액(B) ¹⁴⁾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금 (C=B/A)	법정지원율(6%) 대비 미달 비율 (D=6%-C)
2014	370,464	10,191	2.8%	3.2%p
2015	397,975	15,185	3.8%	2.2%p
2016	421,733	18,914	4.5%	1.5%p
2017	444,440	19,011	4.3%	1.7%p
2018	533,209	18,801	3.5%	2.5%p
2019	578,154	18,082	3.1%	2.9%p
2020	639,260	18,801	2.9%	3.1%p
2021	664,901	19,167	2.9%	3.1%p
2022	727,540	18,149	2.5%	3.5%p
2023	761,822	18,208	2.4%	3.6%p
2024	846,022	19,022	2.2%	3.8%p
2025	875,646	18,701	2.1%	3.9%p

*자료: 보건복지부

14) 위의 담배부담금의 65%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017, 2018년, 2019년의 경우 실제 지원은 그보다 적은 액수로 집계되었음.

□ 개정안은 지원기준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에서 ‘전전년도 보험료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여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특히 향후 고령화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및 개정안 규정 비교>

구분		현 행	개정안
지 원 금 액	지 원 기 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지 원 비 율	6%	6%
	재 량 여 부	상당하는	해당하는
지 원 상 한		해당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	삭제
일 물 규 정		'27년 12월 31일까지	삭제
조 문 방 식		부칙	본칙

□ 개정안에 따라 기금의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를 산출해 보면 총 4조 5,932억 2,800만원이며, 이는 현행 규정에 따른 지원금에 비하여 2조 6,910억 4,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임.

< 개정안의 기준에 따른 지원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	개정안
지원비율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 (단,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국고지원금 규모	1,902,181 * '24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29,264억원)의 65%	4,593,228
추가 재정소요	-	+2,691,047

※ '24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846,022억 원, '24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29,264억 원,
'22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765,538억 원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받은 재원을 사용하

는 사업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생략)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생략)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 용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매년 법정부담금의 상
당액(2021년: 64.7%, 2022년: 64.2%, 2023년 61.2%, 2024년: 60.3%)
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부담금 수입액이 3조원 수
준에서 정채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2020~20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23년 결산	'24년 결산
수입	□ 자체수입	3,045,893	3,071,450	2,953,924	3,099,777	3,290,813
	○법정부담금	2,967,130	2,962,962	2,824,994	2,973,665	3,156,595
	○재산수입	4,891	7,151	15,006	25,564	21,945
	○기타수입	73,872	101,337	113,923	100,548	134,218
	□ 정부내부수입	780,898	904,759	943,044	1,262,389	1,121,131
	○공자기금 예수금	748,300	845,922	700,000	700,000	1,077,704
	○계정간전입금(의료계정)	32,598	58,837	243,044	562,389	43,427
	○계정간전입금(증진계정)	-	-	-	-	-
	□ 여유자금회수	289,987	324,506	353,419	161,637	132,503
합계		4,116,778	4,300,715	4,250,388	4,523,803	4,544,447
지출	□ 사업비	3,369,531	3,452,690	3,447,102	3,666,340	3,621,432
	○경상사업비	1,489,439	1,536,040	1,632,162	1,845,501	1,719,251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1,880,092	1,916,650	1,814,940	1,820,839	1,902,181

☐ 기금운영비	89	89	63	85	87
☐ 정부내부지출	422,652	494,454	641,648	724,876	570,049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51,454	55,617	59,604	88,487	106,622
○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338,600	380,000	339,000	74,000	420,000
○ 보건의료계정으로 전출	32,598	58,836	243,044	562,389	43,427
○ 국민건강증진계정으로 전출	-	-	-	-	-
☐ 여유자금 운용	324,505	353,482	161,575	132,502	352,879

*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2016년과 2017년 제외)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100%를 투입하여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원 상한을 삭제할 경우 법정 사용 사업인 금연교육 등에는 집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담배부담금 예상수입(100%)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6%) 비교(2014~2025년)>

연도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		연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 총액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100%)
2014	22,228	>	15,679
2015	23,879	>	23,362
2016	25,304	<	29,099
2017	26,666	<	30,670
2018	31,993	>	30,356
2019	34,689	>	29,247
2020	38,356	>	28,924
2021	39,894	>	29,487
2022	43,652	>	27,922
2023	45,709	>	28,013
2024	50,761		29,264
2025	52,539		30,587

* 자료: 보건복지부

□ 셋째, 현행 규정은 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

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반면, 개정안은 국가가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정률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수지나 건강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그 밖에 개정안과 같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항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지원 기준 변경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점,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보험료 수입 증가 추세 대비 담배부담금 수입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증진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 상한 등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에 찬성하나, 국고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급격한 의료 환경 변화나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하므로, 국고 지원 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 증가 추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획예산처는 ① 결산상 보험료 수입과 관련하여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건강보

험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독립 원칙에 위배되되고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과 같이 국가 재정체계 내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② 국고지원 상한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담배부담금 수입 등 국가재정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국고지원 규정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하고, ③ 일몰 규정과 관련하여 국고지원은 의약분업으로 일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07년부터 한시도입되었으므로, 일몰 규정 삭제는 당초지원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일몰규정은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간접적 통제장치이므로 규정 삭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재정경제부는 건강보험은 보험 원칙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의 균형을 고려한 재정운영이 원칙이고 국고지원 강화에 앞서 건강보험의 자체적 지출효율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국민 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외에도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중인 점, 국가 재정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타 사회보험처럼 국가 재정체계내 편입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01